# 입주자 앞 대환대출

#### 상품특징

•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건설자금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20년까지 지원

#### 대출신청자격

<대상1>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(대환대출 기본자격)□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분양자,일반분양자, 선착순 분양자 등 \* 기존대출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 상환 후 취급 가능\*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<대상2>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아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,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(만 30세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 전 기간 무주택)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인 이하인 고객 (생애최초주택구입자・2자녀(미성년자)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는 8천5백만원 이하)\*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의 근로소득(상여금 및 수당 포함) 및 사업소득을 말함※ 2세대 이상 대환하는 개인(개인사업자)은 <대상2>조건을 충족할 경우, 1세대만 <대상2>의 대출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며,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대환대출 기본자격<대상1>으로 취급하여야함.

#### 대출금액

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

##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20년(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)**※ 다만,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은 다음과 같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따름.**□ 대출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□ 상환방법: 비거치 또는 1년거치 후 원리금(또는 원금)균등분할상환(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)

## 대출대상주택

대환취급 가능한 사업자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 입주자 명의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(또는 소유권 이전등기)를 할 수 있는 주택

## 금리 및 이율리스트 펼치기

## 대출금리(대상1,2)

1) 대상 1(대환대출 기본자격)

- 기본금리(A): 연 2.8%(2025.04.18 기준,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)
- **우대금리(B):**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, 은행이 사업주체에 자격확인 후 적용주 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: 연 1.0%p사업주체로부터 별도 통지받은 전용면적 60㎡이하 보훈대상자: 연 1.0%p부도임대사업장: 연 0.5%p(최초 10년간)
- 최종금리(A-B): 연 1.8%(우대금리 적용 시) ~ 연 2.8%

#### 2) 대상 2(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)

• 기본금리(A): 연 2.85% ~ 4.15%(2025.04.10 기준,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, 10년 고 정 후 변동금리, 5년단위 변동금리, 변동금리)\*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(서울, 인천, 경기 지역 이외)인 경우에는 아래 특례금리에서 0.2%p인하

부부합산 연소득	대출기간			
	10년	15년	20년	30년
	2천만원 이하	연 2.85%	연 2.95%	연 3.05%
	2천만원 초과4천 만원 이하	연 3.20%	연 3.30%	연 3.40%
4천만원 초과7천 만원 이하	연 3.55%	연 3.65%	연 3.75%	연 3.80%
7천만원 초과8천 5백만원 이하(신 혼가구)	연 3.90%	연 4.00%	연 4.10%	연 4.15%

- **가산금리(B):**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시 0.1%p,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시 0.2%p, 고정금리 선택시 0.3% 가산
- 우대금리(C):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(단, 청약(종합)저축 장기 가입자, 부동산 전자계약,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가구, 대출한도 30%이하 신청, 원금 중도상환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)※우대금리는 최대 0.5%(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입주자 및 전용면적 60m²이하 보훈대상자는 1.0%, 다자녀 가구는 0.7%)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(단,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구입(중도금)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)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: 연 0.5%p생애최초주택구입자・장애인・다문화・신혼가구(생애최초주택구입자/신혼 가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: 각 연 0.2%p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1.0%p사업주체로부터 별도 통지받은 전용면적 60㎡이하 보훈대상자 연 1.0%p부도임대사업장 연 0.5%p(최초 10년간)1자녀가구(미성년 자녀 1인인가구): 연 0.3%p, 2자녀가구(미성년 자녀 2인인가구): 연 0.5%p, 다자녀가구(미성년 자녀 3인이상인가구): 연 0.7%p(단,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, 최대 15년 적용)청약(종합)저축 장기 가입자(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.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(택1)□ 가입기간(납입회차)에 따라 5년(60회차) 연 0.3%p, 10년(120회차) 연 0.4%p, 15년(180회차) 연 0.5%p 적용(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)□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

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.3%p, 10년 이상 연 0.4%p, 15년 이상 연 0.5%p 적용\*신규 분양아파트(해당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시)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 함※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가능※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, 선납은 포함\* 청약예금·청약부금,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)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우 또는 주택청약종 합저축 이용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(종합) 저축, 청약 예금, 청약부금의 납입기간·회차·금액을 포함함※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(종합) 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,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 리 적용 불가부동산 전자계약(2025.12.31.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. 단, 자산심사신청일 이 2025.1.1이후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해당 우대금리 적용): 연 0.1%p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구 : 0.2%p(조세특례제한 법령에 따라 수도권 이외 소재 주택에 대하여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. 다만,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% 이하로 대출신청시 적용(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: 연 0.1%p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대 출잔액에 대해 금리우대 적용(분할상환 제외, 2024.7.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, 금리우대 기준 충족시 조건변경 신청 필요): 연 0.2%p

최종금리(A+B-C): 연 1.65%(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)~ 연 4.45%\* 국토교통
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 변동될 수 있음

#### 생애최초 신혼가구

<대상2>에 해당하는 고객으로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

• 기본금리(A): 연 2.55% ~ 3.85%(2025.04.10 기준,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, 10년 고 정후 변동금리, 5년단위 변동금리, 변동금리)

부부합산 연소득	대출기간			
	10년	15년	20년	30년
	2천만원 이하	연 2.55%	연 2.65%	연 2.75%
	2천만원 초과4천 만원 이하	연 2.90%	연 3.00%	연 3.10%
4천만원 초과7천 만원 이하	연 3.25%	연 3.35%	연 3.45%	연 3.50%
7천만원 초과8천 5백만원 이하	연 3.60%	연 3.70%	연 3.80%	연 3.85%

- 가산금리(B):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시 0.1%p,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시 0.2%p, 고정 금리 선택시 0.3% 가산
- **우대금리(C):**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 (단, 다자녀가구/ 2자녀가구/ 1자녀가구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불가)\*우대금리는 최대 0.5%(다자녀 가구는 0.7%)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1자녀

가구(미성년 자녀 1인인가구): 연 0.3%p, 2자녀가구(미성년 자녀 2인인가구): 연 0.5%p, 다자녀가구(미성년 자녀 3인이상인가구): 연 0.7%p(단,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. 최대 15년 적용)청약(종합)저축 장기 가입자(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. 대출실행일로부 터 5년간 적용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(택1) 다입기간(납입회차)에 따라 5년 (60회차) 연 0.3%p, 10년(120회차) 연 0.4%p, 15년(180회차) 연 0.5%p 적용(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)□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 부터 5년 이상 연 0.3%p, 10년 이상 연 0.4%p, 15년 이상 연 0.5%p 적용**\*신규 분양아파** 트(해당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시)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\*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가능 \*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 서 제외하나, 선납은 포함\* 청약예금·청약부금,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 림 청약통장 포함)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우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 주택드림 청 약통장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(종합) 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종합저축의 납입 기간·회차·금액을 포함함※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(종합)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,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부동산 전 자계약(2025.12.31.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. 단, 자산심사신청일이 2025. 1.1이후인 경 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해당 우대금리 적용): 연 0.1%p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구: 연 0.2%p (조세특례제한 법령에 따라 수도권 이외 소재 주택에 대하여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. 다만,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% 이하로 대출신청시 적용(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: 연 0.1%p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우대 적용(분할상환 제외, 2024.7.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, 금리우대 기준 충족시 조건변경 신청 필요): 연 0.2%p

• 최종금리(A+B-C): 연 1.65%(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) ~ 연 4.15%\* 단,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)의 대출조건을 적용①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(단, 기금 전세자금은 대출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취급 가능)②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③ NICE의 신용평점이 349점 이하인 경우(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350~354점으로 간주)④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"일반신용 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\* 국토교통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#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신청 가구

<대상 2> 에 충족하는 고객으로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자(연소득 7천만원이하, 신혼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는 다음의 대출금리로 적용합니다.

 기본금리(A): 국토교통부 고시금리(고정금리,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, 5년 단위 변동금리, 변동금리)를 적용합니다.\*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(서울, 인천, 경기지역 이외)인 경우에 는 아래 기본금리에서 0.2%p인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사항을 소득수준, 만기(10 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)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부부합산소득만기10년15년20년30년

40년2천만원 이하연 2.40%연 2.45%연 2.55%연 2.70%연 2.80%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연 2.80%연 2.85%연 2.95%연 3.10%연 3.20%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연 3.20%연 3.25%연 3.35%연 3.50%선택불가7천만원 초과8천5백만원 이하연 3.55%연 3.60%연 3.70%연 3.85%선택불가8천5백만원 초과1억원 이하연 3.90%연 3.95%연 4.05%연 4.15%선택불가

- 가산금리(B):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시 0.1%p,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시 0.2%p, 고정 금리 선택시 0.3% 가산
- **우대금리(C)**: 대출실행 이후 아래 1~3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(중복 적용 가능)\***우대금리는 최대 1.0%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**\* 대출실행 이후 결혼 또는 자녀수가 늘어난 경우에 결혼 및 자녀가 늘어난 시점에 금리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항목	가산금리	적용조건	우대기한
1	결혼	연 0.1%p	대출실행일 이후 결혼한 경우	5년간 적용
2	최초 출산	연 0.5%p	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한 경우	자녀 1명당 5년간 적용(최대 15년)
3	추가 출산	연 0.2%p	대출실행일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.2% 적용	자녀 1명당 5년간 적용(최대 15년)

• 적용금리(A+B-C):최저 연 1.5%(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) ~ 최고 연 4.45%\* 단, 적용금리가 연 1.5%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.5%로 적용합니다.\*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전 금리입니다.

## 중도상환수수료

없음

## 이용조건리스트 펼치기

#### 담보

해당 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

## 유의사항 및 기타리스트 펼치기

#### 기타

1) 대상 1(대환대출 기본자격)▶ 기존대출금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의 전세 자금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합니다.2) 대상 2(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)▶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

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불가합니다.※단,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▶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(중도금대출, 채무인수 미필계좌,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)을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.▶ NICE의 신용평점이 349점 이하인 경우(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가 없는 경우 350~354점으로 간주) 대출이 불가합니다.▶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불가합니다.

####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

▶ 이자 · 분할상환금 ·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, 대출만기일 경과시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▶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+ 연 4%p,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+ 연 5%p가 적용됩니다.▶연체이자율(지연배상금률)이 연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%가 적용됩니다.<기한의 이익이란?>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받는 이익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▶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』에 의거 신용불량 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

▶ 대출금 5천만원 초과시 고객부담으로 수입인지 대금의 50%,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. 또한 근저당권의 감액 및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.▶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(지급보증 대급금 포함) 보유,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,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▶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(1599-1771)로 문의하시거나, 홈페이지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▶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(http://nhuf.molit.go.kr)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.▶ 상품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▶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기금의 구입 및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

##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
반: 연 2.65% ~ 연 3.95%, 생애최초 신혼가구: 연 2.35% ~ 연 3.65% 변경후 □ 일반: 연 2.85% ~ 연 4.15%, 생애최초 신혼가구: 연 2.55% ~ 연 3.85%<기존고객적용여부>적용<변경내용>□ 금리적용방식 추가 및 금리적용방식에 따른 가산금리 신설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신설 5년단위 변동금리는 0.1%p, 10년 고정후 변동금리는 0.2%p, 만기까지 고정금리는 0.3% 가산□ 금리우대 적용가능한 상한 금리 설정□ 금리우대 항목 삭제 및 추가 삭제 - 신규 분양주택가구 우대금리 (0.1%p) 추가 □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가구 우대금리 (0.2%p)□ 자녀 금리우대항목 중복적용 불가 및 최대 적용기한 설정 변경전- 다자녀/2자녀/1자녀 금리우대 타 금리우대와 중복적용 불가 및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<기존고객적용여부>부<시행일>2025.03.24
>2024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부

따른 금리구간 신설 일반 : 연 3.30%~연 3.55%생애최초 신혼 : 연 3.00%~연 3.25%<시행 일>2023.10.06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----------<변경내용>□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□ 일반 : 연 2.15% ~ 연 3.00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1.85% ~ 연 2.70% 변경후 🗆 일반 : 연 2.45% ~ 연 3.30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2.15% ~ 연 3.00% 다 청약(종합) 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 리 적용기준 변경□ 변경전- 청약(종합)저축 장기 가입자 (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 용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(택1) ㅇ 가입기간이 1년(3년) 이상이고 12회차(36회차)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.1%p(연 0.2%p)ㅇ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(3년)이상 인 경우 연 0.1%p(연 0.2%p) 변경후- 청약(종합) 저축 장기 가입자 (대출 신청일 현재 자격충 족 시에만 적용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(택1)이 가입기간(납입회차)에 따라 5년(60 회차) 연 0.3%p, 10년(120회차) 연 0.4%p, 15년(180회차) 연 0.5%p 적용 이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.3%p, 10년 이상 연 0.4%p, 15년 이상 연 0.5%p 적용\*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(종합)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,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<시행일 >2023.08.30<기존고객적용여부> □ 기본금리 인상: 고정금리(미적용), 변동금리(적용) □ 청 약(종합)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: 미적용----------<변경내용>□ 입주자 앞 대환대출(내 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) 금리우대 적용 기준 변경<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(0.1%) 적용 기준 변경>- 변경전: 폐지- 변경후: 20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<시행일>2023.02.10<기존고객 적용여부>부----------<변경내용>□ 전자계약 금리우대(0.1%) 적용 기준 변경- 변경전: 20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- 변경후: 폐지<시행일>2023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부-----------<변경내용 >□ 입주자 앞 대환대출(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) 우대금리 기간 연장<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기간 연장> 변경전 🗆 2022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🗆 20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<시 행일>2023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부----------<변경내용>□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□ 일반 : 연 2.00% ~ 연 2.75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1.70% ~ 연 2.45% 변경후 🗆 일반 : 연 2.15% ~ 연 3.00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1.85% ~ 연 2.70% 다 우대금리 요건 명확화 청약(종합) 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요건 추가\*신규 분양아파트(해당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시)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, 청약 예·부금 등은 적용 불가※본인 또는 배우자명의 가능※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·회차·금액 을 포함<시행일>2022.04.11<기존고객적용여부>□ 기본금리 인상: 고정금리(미적용), 변동금 리(적용)----------<변경내용>□ 입주자 앞 대환대출(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) 우대금리 기간 연장<부 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>변경전 🗆 2021.12.31 신규 접수분까지변경후 🗆 2022.12.31 신 규 접수분까지<시행일>2022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- 부<변경내용>□ 입주자 앞 대환대 출(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) 기본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신설- 기본금리 인상변경전 🗆 일반 : 연 1.85% ~ 연 2.40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1.55% ~ 연 2.10% 변경후 🗆 일반 : 연 2.00% ~ 연 2.75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1.70% ~ 연 2.45% - 우대금리 신설신규 분양주택 가구

□ 연 0.1%p<시행일>2021.11.12<기손고객석용여무>- 입수자 앞 대완대술(내십마련니님놀대출 자격)기본금리 인상 : 고정금리(미적용), 변동금리(적용)우대금리 신설 : 미적용
우대금리 적용기간 연장변경전 🗆 2020.12.31까지 적용변경후 🗆 2021.12.31까지 적용<시행일 >2021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(NICE)의 신용등급 10등급 이하(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등급자는 9등급으로 간주)변경후 🗆 신용정보회사(NICE)의 신용평점 349점 이하(금융거래정보 부족으로 신용평가점수가 없
는 경우 350~354점으로 간주)<시행일>2020.12.18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인하변경전 $\square$ 일반 : 연 2.00% ~ 연 3.15%, 생애최초신혼가구 : 연 1.70% ~ 연 2.75%변경후 $\square$ 일반 : 연 1.95% ~ 연 2.70%, 생애최초신혼가구 : 연 1.65% ~ 연 2.40% <시행일
>2020.05.18<기존고객적용여부>고정금리: 미적용, 변동금리: 적용
적용변경후 □ 2020.12.31까지 적용<시행일>2019.12.31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간에 따라 상이)▶ 최종금리: 연 1.8%~3.15%<변경 후>▶ 기본금리: 연 2.00%~3.15%(부부
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상이)▶ 최종금리: 연1.5%~3.15%<시행일>2018.07.16<기존
고객적용여부>미적용②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녀수 우대금리 신설 및 대출요건 완화<변경 전
>▶ 대상자 소득요건: 신 설▶ 우대금리(중복적용불가): 신 설▶ 우대금리(중복적용가능): 신 설
<변경 후>▶ 대상자 소득요건: 신혼가구, 2자녀(미성년자)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▶ 우대금
리(중복적용불가) ○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: 연 0.5%▶ 우대금리(중복적용가능) ○ 1
자녀가구(미성년 자녀 1인인가구): 연 0.2% ㅇ 2자녀가구(미성년 자녀 2인인가구): 연 0.3% ㅇ
다자녀가구(미성년 자녀 3인이상인인가구): 연 0.5%<시행일>2018.09.28<기존고객적용여부
>[자녀수별 우대금리]는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하나, 2018.9.27 이전 취급된 기존계 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가능

##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

개시일: 2013.4.1유효기간: 2025.04.18~ 2026.12.31

#### 필요서류

□ 본인 신분증□ 분양계약서 원본,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(1개월이내 발급분), 전입 세대확인서(동거인 포함)□ 등기권리증(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 시),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)□ 주민등록등본(1개월이내 발급분,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)□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이내 발급분: 단독세대주, 배우자분리세대, 결혼예정자 등)□ 결혼예정 증빙서류(결혼예정자의 경우)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□ 재직(사업영위) 및 소득확인서류(본인 및 배우자)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제출(소득종류확인목적),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-근로자: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(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-사업소득자 등: 사업자등록증명원 /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□ 우대금리 확인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형), 기본증명서(귀화자), 장애인증명서, 청약(종합)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□ (필요시) 청약당첨사실확인서 (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청약요건 확인가능 서류※ 상기 서류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1503-4호

(2025.04.15)] / (유효기간 : 2025.04.18~2026.12.31)